

2020학년도

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0년 10월 15일(목) 16:00

2. 장 소 : 화도관 2층 대회의실

3. 대학평의위원회(11명)

■참석의원 : 송영출, 천성오, 김진곤, 김태석, 김태훈, 김건호, 신희연,
고민석 (8명)

■불참의원 : 이정훈, 김재요, 이재현 (3명)

4. 안 건

가. 자문

1)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(안)

나. 규정 개정/폐지/신설(안)

- 1)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(안)
- 2)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
- 3)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- 4)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- 5) 교원 신규 임용 내규 개정(안)
- 6)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7) 전임 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(안)
- 8) 직원인사 규정 개정(안)
- 9) 직원복무 규정 개정(안)
- 10) 계약직원 임용 내규 개정(안)-1
- 11) 계약직원 임용 내규 개정(안)-2
- 12)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13)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14)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15) 연계·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16) 연구비 관리 규칙 폐지(안)
- 17) 직무 발명 규정 개정(안)
- 18)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개정(안)
- 19)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규정 신설(안)
- 20)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 개정(안)
- 21)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5.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

【자문】

1)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(안)

▪ 기획처 예산조정팀장이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주목적은 대학비대면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장학금 교비절감액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설명하며 수입과 지출의 세부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하다.

▪ 위원장이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, 이에 학생회장 권한대행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인지하여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답하다.

▪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【규정 개정/폐지/신설】

1)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(안)

▪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▪ 주요 내용

- 법인 정관상 광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의 직종 통합 및 직급별 직원 정원을 조정

▪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2)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

▪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▪ 주요 내용

- 외국인학생 직권휴학 제도 신설

- 대학원 통합학칙 제 22조(학기당 이수학점) 개정

▪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3)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▪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▪ 주요 내용

- 2022학년도부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세부전공 명칭 변경

- 외국인학생 학위수여 요건 변경

▪ 제65조(학위수여)의 “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에”를 “외국인 학생에 대한 규정 에”로 수정하기로 하다.

▪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4)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-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외국인학생 학위수여 요건 변경
-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제33조(졸업요건)의 “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에”를 “외국인 학생에 대한 규정에”로 수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5) 교원 신규 임용 내규 개정(안)

-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경력평가지 실무경력도 포함되도록 변경
 - 1차 심사 종료 후 학과 의견 개진 가능
- 위원이 경력평가지 실무경력을 포함하도록 변경되는 사유를 묻고, 교무처장이 이에 대해 다양한 사회경험(수상, 회사경력 등)을 심사표상에 반영할 근거가 없어 감안할 수 있도록 추가함을 설명하다.
- 혼선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15조(기초심사) ②항의 단서조항과 제16조(전공심사) ⑤항의 “필요한 경우”의 문구를 해당 부서에서 수정하여 상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6)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초빙교수 채용 절차 변경 및 겸·초빙교수 담당시간 관련 예외 적용
- 위원이 제8조(임용방법 및 절차)에서 “임용위원회”의 구성을 묻고, 교무처장이 이에 대해 단과대학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침으로 마련하여 구성할 예정임을 설명하다.
- 위원이 제11조(복무) ④항 단서 조항의 예외 사유를 묻고, 교무처장이 이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추가하였음을 설명하다.
-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8조(임용방법 및 절차) ④항 “임용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”를 “임용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”로 수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7) 전임 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(안)

- 교무처장이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전임총장 퇴임 후 총장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처장 책임시수 적용

▪ 제2조(정의) ④항 “그 직무를 수행하고 퇴임한 총장을 말한다”를 “그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총장을 말한다”로 수정하기로 하다.

▪ 제4조(예우) ①항 “전임총장의 주당 책임시수는 처장 강의시수로 한다. 다만 총장 퇴임직후 1년간은 책임시수를 감면할수 있다”를 “전임총장의 총장 퇴임직후 1년간은 책임시수를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책임시수를 주당 3시간으로 한다”로 수정하기로 하다.

▪ 제4조(예우) ②항 “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”는 삭제하기로 하다.

▪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8) 직원인사 규정 개정(안)

▪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▪ 주요 내용

- 법인 정관상 광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의 직종 통합 및 직급별 직원 정원을 조정
- 민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사규정 용어 변경

▪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9) 직원복무 규정 개정(안)

▪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▪ 주요 내용

- 배우자(처) 출산휴가 기간 조정(1일 → 10일)
- 임신중의 여성직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조정

▪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10) 계약직원 임용 내규 개정(안)-1

▪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▪ 주요 내용

- 무기 계약직원 직무분야 입학처(입학사정관실) 인원을 5명으로 정하고, 인원 범위 내 재직자 변경 허용

▪ 위원은 계약직원 임용 내규의 [별표 1]은 TO개념이 아니라,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설명하고, 총무팀장과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.

▪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11) 계약직원 임용 내규 개정(안)-2

▪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▪ 주요 내용

- 외국인 계약직원의 주거 안정화 도모를 위한 주거지원비 지급

▪ 위원이 주거지원비 지급금액 및 기준을 묻고, 이에 총무팀장이 타 대학사례와 지

급금액을 담한다.

- 위원이 향후 외국인 계약직원 증가로 인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, 이에 총무팀장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 후 진행하기로 답변하다.
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12)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- 주요 내용

-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본교 사회복지학연계전공 취득기준 변경
- SW중심대학 사업의 연계전공 신설 반영

- 표현의 정확성과 학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[별표 1]의 연계전공별 이수 학점표의 "사회복지학(2020학년도 신입생부터)"를 "사회복지학"으로 수정하고 하단의 각주로 별도 표기하기로 하다.
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13)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- 주요 내용

- 외국인 대학원생 직권휴학 제도 신설
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14)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- 주요 내용

- 교육부 「대학생 공결 인정」제도개선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,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공결이 가능하도록 규정

-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7조(공결 및 유고결석) ③항 "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"를 "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"로 수정하기로 하다.
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15) 연계·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교육지원팀 담당직원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- 주요 내용

-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본교 사회복지학연계전공 취득기준 변경에 따른 이수학점 범위 내용 수정
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16) 연구비 관리 규칙 폐지(안)

- 연구지원팀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연구비 관리 규칙 폐지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17) 직무 발명 규정 개정(안)

- 산학사업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특수관계인에게 기술이전 되는 경우에 대한 직무발명 규정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18)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개정(안)

- 연구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및 담당부서 등 변경
-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3조(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) ②항 “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”를 삭제하기로 하다.
-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3조(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) ⑤항 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”를 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”로 수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19)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 개정(안)

- 산학사업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노사 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인사규정 용어 및 직원 처우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20)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연구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- 교육부훈령 제263호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근거에 의거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 개정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21)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(안)

- 기획부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- 주요 내용

- 학점은행제 학업성적평가의 절대평가 규정 신설

- 학칙과의 통일성을 위해 제18조(성적부여) ①항 "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"를 "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"로 수정하기로 하다.

- 제18조(성적부여) ①항 "실습 비중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"를 "실습비중이 수업시간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"로 수정하기로 하다.
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【별도 논의 사항】

1) 교수업적평가 규정 [봉사 분야 기준]

- 위원장이 현행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봉사분야 기준에서 교수평의회 교내봉사 점수와의 균형성과 형평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대학평의회 의장 및 위원들의 교내봉사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다.

- 의결내용 : 상기 제안사항이 차기 위원장 및 위원들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교무처에 제안할 것을 위원 전원이 동의하다.

6. 폐회

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.

2020년 10월 15일

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.

의 장

송 영 출

(서명)

부 의 장

천 성 오

(서명)

평 의 원

김 태 석

(서명)

평 의 원

이 정 훈

(서명)

평 의 원

김 재 요

(서명)

평 의 원

김 진 곤

(서명)

평 의 원

김 태 훈

(서명)

평 의 원

김 건 호

(서명)

평 의 원

신 희 연

(서명)

평 의 원

이 재 현

(서명)

평 의 원

고 민 석

(서명)